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3호로 2022년 11월 10일 우경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영등포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11.8.~11.13./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에 대해 규정함.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관련 정책 추진·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함.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는 상황임.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등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7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제9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치료 중 임신 등으로 자격 상실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 중단, 환수 조치하도록 함.
- 안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함.

○ 검토 결과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마련 등 책임을 규정하고,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 10.(생략)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12.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 ⑥(생략)